

【 주간 포커스 】

EU의 금융감독 개혁 방향

이정환 선임연구원

EU의 경제·재무위원회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개혁안을 비준하였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실시를 결정하고, 은행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뜻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미시적·거시적 금융감독체제가 강화되고 금융기관의 자기책임도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 EU 회원국들은 그 동안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옴¹⁾.
 - 금융위기를 통해 헤지펀드, 주식 공매도 등과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미시적 금융감독뿐만 아니라 거시적 금융감독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함.
 - 특히 유럽의 기존 금융감독체제는 국가간 연계된 금융거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악화시킨 것으로 인식됨.

- 금년 9월 초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경제·재무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는 미시적 및 거시적 금융감독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비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²⁾.
 - 미시적 금융감독체제는 EU 회원국의 감독기관들과 이들 감독기관들을 감독하는 범유럽 은행, 보험, 증권 금융감독청³⁾들로 구성됨.
 - 거시적 금융감독체제는 유럽시스템리스크관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의 신설을 통해 유럽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감독하게 됨.

1) EU, Impact Assessment of European Financial Supervision, 2009.5.27.

2) European Parliaments, Financial regulation on track but this is only the beginning, 2010.9.

3) EU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U보험퇴직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EU증권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uthority)

- 미시적 금융감독체제는 EU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와 국가간 금융감독 분쟁을 해결하는 임무를 담당
 - 그 동안 EU 회원국간 공조가 부족하여 동일한 규정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하게 해석함에 따라 위기대처 시 유럽 전체의 금융감독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을 반영
 - 향후 금융감독청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모범감독규준 마련, 충분한 감독권 이양, 조정능력 및 세부 감독정보 수집권 부여’ 등이 보강될 예정임.
 - 비준된 개혁안에서는 초기 개혁안과는 달리 금융감독청들이 금융기관과 시장을 직접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해 모범감독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금융감독청들에게는 금융위기 발생 시 신용평가기관과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정산소(clearing house)의 인허가, 현장 감독권, 금융기관 간 M&A 평가 및 공매도 금지와 같은 비상조치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청의 권한은 EU 조약 226조와 228조(회원국 간의 상호 책임을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예정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 정보 수집을 위해 금융감독청들의 관리를 받는 EU중앙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며, 취합된 정보는 각국의 금융감독청들과 ESRB에 전달될 예정임.

- IMF의 거시적 금융감독 강화에 공조하여 신설되는 ESRB에는 금융시스템 실패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 평가, 대처방안의 권고 등 다양한 임무가 부여됨.
 - EU와 IMF 등은 신용 과잉, 자산가격 상승, 금융리스크 저평가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함.
 - 이에 따라 EU는 IMF와 G20가 글로벌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조기 경보를 위해 공동 제안한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같은 기능의 ESRB를 설립함.
 - ESRB는 금융안정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 평가,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 발령, 대처 방안을 권고할 예정임.
 - 또한 조기 경보 및 대처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임무도 부여될 것으로 보임.

□ 한편, EU는 회원국의 예산 및 경제정책도 감독함으로써 재정적자 문제와 유럽내의 거시경제정책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속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유럽중앙은행은 재정긴축이 이루어질 경우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될 수 있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감세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긴축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음⁴⁾.
- EU는 금융시장의 안정 제고와 지속성장이라는 목표하에 회원국의 예산을 해당국의 의회와 함께 감독함으로써 재정긴축을 유도하기로 결정함.
- 또한 유럽의 거시경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들을 사전에 감독·조율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뜻을 밝힘.

□ 또한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금융기관의 자기책임 강화를 위한 은행세의 도입에 대해서도 비록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주요 회원국들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지난 5월 EU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은행세를 거둬들인 뒤 이를 일시적인 유동성 제공 및 부실자산 구입 등 파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은행세는 신용·재정 건전성 약화시 구제금융이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마불사 관행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반박도 제기됨.
- 이번 9월 유럽경제·재무위원회에서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의 주요국이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향후 귀추가 주목됨. KiRi

4) European Central Bank, Monthly Bulletin, 2010.6.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GDP 대비 정부 부채를 성공적으로 감소시킨 사례로 벨기에(1994-2007, 50%p 감소), 아일랜드(1994-2007, 69%p 감소). 핀란드(1995-2008, 24%p 감소)를 거론하고, 긴축재정과 정부부채·성장과의 관계를 비용·편익 분석함.